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7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김성희 의원 외 6인

나. 회부일자: 2020. 10. 20.

다. 상정일자

- 제2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 10. 27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김성희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으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 포함)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토록 한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6조)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‘마포문화재단’ 소유의 공유재산을

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다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이므로 구청장이 재단 소유의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

## 【참고자료 I】

###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현황

○ 서울시 자치구 중 해당 조례 제정 : 22개 구

※ 조례 미제정 : 용산구, 서대문구, 강서구

-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조항 존재 : 19개 구

- 해당 조항 삭제 : 2개 구

· 중구 :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(법제처) 수용에 따라 삭제<2018.12.28.>

· 강남구 : 문화재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삭제 <2015.07.10.>

연번	자치구	소관부서	규정사항	비고
1	종로구	문화과	<b>제21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2	중구	문화관광과	<b>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삭제</b> <2018. 12. 28.>	
3	용산구			조례 미제정
4	성동구	문화체육과	<b>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	
5	광진구	문화체육과	<b>제18조(공유재산 무상사용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
6	동대문구	문화관광과	<b>제17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
연번	자치구	소관부서	규정사항	비고
7	중랑구	문화관광과	<b>14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8	성북구	문화체육과	<b>제17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9	강북구	문화관광 체육과	규정없음	
10	도봉구	문화체육과	<b>제18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	
11	노원구	문화예술과	<b>제14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	
12	은평구	문화관광과	<b>제15조(공유재산 대부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	
13	서대문구			조례 미제정
14	마포구	기획예산과	<b>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
연번	자치구	소관부서	규정사항	비고
15	양천구	문화체육과	<b>제21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	
16	강서구			조례 미제정
17	구로구	문화관광과	<b>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18	금천구	문화체육과	<b>18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19	영등포구	문화체육과	<b>제1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</b>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<삭제 2020. 9. 17.>	
20	동작구	체육문화과	<b>제18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	
21	관악구	문화관광체육과	<b>제12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재단에게 무상사용·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.	

연번	자치구	소관부서	규정사항	비고
22	서초구	문화관광과	<b>제13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	
23	강남구	문화체육과	<b>제19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</b> <삭제 2015. 07. 10.>	
24	송파구	문화체육과	<b>제11조(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)</b>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25	강동구	문화예술과	<b>제17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</b>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
## 【참고자료 II】

### 「민법」

제48조(출연재산의 귀속시기)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.

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.